

자산보관 · 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자기구자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흥공상하이은행 서울지점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8963/0991

제49조	4)	4)<추가>제 4 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 및 동법 시행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
------	----	--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 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E (주식·재간접형)
- 나. 집합투자기구분류: 증권 [주식·재간접형] 집합투자기구
- 다. 보관 · 관리기간: 2012.01.01 - 2012.12.31
- 라. 집합투자업자: 피델리티자산운용(주)
- 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교보증권, 신한금융투자, 한국투자증권, 대신증권, 대우증권, 신영증권, 유진투자증권, 메리츠종합금융증권, 우리투자증권, 하나대투증권, 현대증권, 한화투자증권, 동양증권, 삼성증권, 동부증권, 메릴린치증권서울지점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대구은행,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, 경남은행, 외환은행, 광주은행, 한국씨티은행, 한국산업은행, 부산은행, 흥공상하이은행, 신한은행

2.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 일자	변경 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12. 05. 02	제1조 (목적 등)	③ 이 투자신탁은 (중략) 목적으로 한다.	<삭제>
	제26조	이 경우 (중략) 통지하여야 한다.	<삭제>
	제26조	나. 모두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	나. 모두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
	제39조	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	(삭제) 전산시스템에 의하여
	제40조	라.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: 최고 연 0.030 %	라.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: 최고 연 0.028 % 6. 종류 C-e 수익증권 보수율추가
	제48조	서류 작성과 외부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	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
	제49조	3) 제 3 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(중략) 1 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.	3) 삭제

- 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- 해당사항없음
- 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- 해당사항없음
- 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 - 해당사항없음
- 6. 회계감사인의 선임 · 해임에 관한 사항

회계 감사인명	계약 기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	회계	계약	감사	계약
				감사인명	기간	보수	방법
상일 회계법인	1년	154만원	서면계약	-	-	-	-

*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, 위에 명기된 회계감사인보수 금액은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지급되는 보수 금액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

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-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- 부합함
-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- 적정함
-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- 해당사항없음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- 공정함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- 적정함
-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- 해당사항없음
-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 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산을 보관 · 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-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- 해당사항없음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